#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32

발의연월일 : 2024. 10. 30.

발 의 자 : 송언석 · 박대출 · 김상훈

박준태 • 구자근 • 박수영

이종욱 • 박성훈 • 이인선

백종헌 · 이철규 의원

(119]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소득수준 향상,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이 증가하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 중이나, 제조업 중심 지원정책 등으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낮고 서비스 수출도 정체되고 있는바, 최근 4차 산업혁명 신기술발전에 대응하여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촉진 등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서비스산업 음부즈만 설치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차원의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발전하고 수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 진상황의 점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5년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그 추진상황을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서 점검하도록 함.
- 나.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 재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 위촉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다. 서비스산업 갈등조정기구 구성 및 운영(안 제12조)
  -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및 신사업 출현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발전 위원회에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라.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안 제15조부터 제17조)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서비스산업 경 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우수 연구개발 성

과를 인증하며, 연구개발 결과가 지식재산권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지원함.

마. 서비스산업 분야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안 제19조)

정보통신·인공지능·블록체인·데이터기술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서비스산업 분야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활성화(안 제20조 및 제21조)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서비스기업 간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연구인력의 교 류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서비스산업 융·복합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에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 서비스 신사업 창출 촉진(안 제22조)

신기술과 서비스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신사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거나 조달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 서비스 신산업 관련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안 제23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사업의 인허가 등에 있어 법령이나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거부, 반려 또는 불합리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그 사업의 인허가 등이 이루어진 이후,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갈등 발생, 안전·환경·보건 상의 중대한 위해 사유가 발생 또는 발생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보완을 요구할수 있도록 함.

자.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인력 양성사업 등의 추진 및 서비스 계약학과 설치를 지원하며, 서비스산업 특성화 기관·단체,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을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차. 서비스산업 옴부즈만 설치(안 제28조)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서비스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카.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의 근거 마련(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업의 창업 및 서비스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 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제조업에 비하여 서비스산업에 불리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함.

타. 서비스 수출 지원(안 제32조)

서비스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외 시장 조사, 홍보 및 국외 마케팅 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 수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를 설치함.

# 파.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설치(안 제33조)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 조사, 연구 및 정책적 제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 는 전문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하. 서비스산업 통계의 작성·관리(안 제35조)

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 장과 협의하여 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4차 산업혁명 및 서비스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촉진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서비스산업의 기반을 조 성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 로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 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서비스업을 말한다.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서비스산업과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3.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이란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및 서비스 간의 융합 등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말하며, 기술 개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인문·사회·문화 측면에서의 연구개발 등을 포함한다.

- 4. "서비스 수출"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 (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등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통한 전송 등의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영상물(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를 포함한다),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 형태의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
  - 나.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
  - 다. 거주자의 외국으로의 이동에 의한 제공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을 수립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

우에는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또는 생산성 향상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따른다.

#### 제2장 서비스산업발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5조(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 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서비스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9조에 따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서비스산업 발전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관련 정책의 추진계획
  - 3.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4.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 5. 서비스산업으로의 사업전환, 다른 산업과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 산업간의 융·복합 촉진에 관한 사항
  - 6.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방안

- 7. 서비스산업 분야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
- 8. 서비스산업 관련 국제협력과 서비스 수출 촉진 방안
- 9. 지역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
- 10. 그 밖에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연구 기관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서비스산업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제9조에 따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9조에 따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 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반영 한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 관련 계획 및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서비스산업 관련 주 요 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발

- 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다수 부처가 관계된 사항의 협의에 관한 사항
- 3.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 4.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 및 재정·세제·금융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5. 서비스산업 육성 및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관한사항
- 6. 서비스산업으로의 사업전환, 다른 산업과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 산업간의 융·복합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 7. 서비스산업 인력의 양성, 수요 · 공급 등 인력정책에 관한 사항
- 8.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서비스 수출에 관한 사항
- 9. 새로운 서비스 출현에 따른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 10.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인력에 관한 사항
- 11.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방안에 관한 사항
- 12. 제7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13. 제13조에 따른 서비스산업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개선 방안 권고에 관한 사항

- 14. 제29조에 따른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5. 제33조에 따른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 16. 그 밖에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제33조에 따른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에 조사·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당연직 위원 및 20명 이내의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 2.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
  -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무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 ④ 위촉위원은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 안건의 사전 심의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갈등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서비스산업의 융· 복합, 신사업 출현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갈등 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갈등조정기구를 통한 합의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갈등조정기구가 갈등해결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해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조정기구를 통한 합의사항을 고려하여 서비스산업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갈등조정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서비스산업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①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 하여 해당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제3장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지원

- 제14조(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비스산업 육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 2. 다른 산업과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산업간의 융·복합 관련 연구 개발
- 3. 서비스 수출 및 국제화를 위한 연구개발
- 4. 기초 · 응용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 (施策)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관련 정책 방향
- 2.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관련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 3.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 4.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 5.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동향, 우수사례, 시장상황 등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 ④ 위원회는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등을 심의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의 심의회의에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6조(서비스산업 우수 연구개발 인증제도)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 야에서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발굴하여 인증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인증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출과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지원, 세제지원, 구매지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대상·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결과의 보호) 정부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결과가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지식재산으로서의 권리(다른 산업과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산업간의 융·복합 관련 연구개발의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로 확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18조(표준화)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및 서비스의 투명성·전문성 향상을 통한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서비스(다른 산업 및 기술과 결합되거나 서비스간 결합되어 기존 서비스의 경쟁력 및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표준을 제정하고, 서비스 표준이 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에 관하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
- 제19조(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및 서비스의 활용 촉진) ① 정부는 서비

스산업 분야에 활용 가능한 정보통신·인공지능·블록체인 및 데이터기술 등(이하 "신기술"이라 한다)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의 개발·보급, 관련 표준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해당 서비스산업에 활용가능한 신기술 개발 및 보급 전략, 신기술과 해당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촉진 전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신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서비스산업 융 · 복합 활성화 등 신서비스 개발 촉진

- 제20조(서비스산업으로의 사업전환 및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 등 지원)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산업으로 의 사업전환, 다른 산업과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산업 간의 융·복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외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2.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외 업종의 사업 규모를 줄이 거나 유지하면서 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②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서비스기업 간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 2. 다른 산업과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산업 간 연구인력의 교류 활성화
- 3. 서비스산업 융·복합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 4. 서비스산업 융·복합 관련 전문인력과 융·복합 연구개발과제 등 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 5. 그 밖에 다른 산업과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산업 간 교류 및 협력 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21조(서비스산업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활성화 및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관련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33조에 따른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협의체로서 서비스산업 융합연구개발 혁신지원단(이하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구성원간 협력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융·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연구개발

- 2. 국내외 서비스산업 융·복합 연구개발 혁신 사례 조사 및 융·복 합 연구개발 수요 발굴
- 3. 서비스산업 융·복합 연구개발 사업화 촉진 및 융·복합 연구개발 결과물의 보급 및 확산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수 있다.
- ④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서비스 신사업의 창출 촉진)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거나 조달기업 에 대하여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 1. 신기술과 서비스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 2. 인구의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서비스 수요변화에 대한 대응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 및 조달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3조(신사업의 인·허가 등)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융·복합 서비스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사업의 인·허가, 등록, 신고 등(이

- 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있어, 법령이나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거부, 반려 또는 불합리한 보완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이 이루어진이후,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갈등 발생, 안전·환경·보건 상의 중대한 위해 사유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사후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사후 보완 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사후 보완 요구를 받은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인·허가등을 취소, 정지, 철회할 수 있다.

#### 제5장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 제24조(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수급동향 조사)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1. 서비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
  - 2. 서비스산업 인력이 디지털 전환, 신사업 진출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도록실시하는 재교육 또는 재훈련에 필요한 정책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정부는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수급동향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며, 대학 등 교육기관은 이를 활용하여 학생 정원 운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25조(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제24조에 따른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전문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고려하여 서비스산업 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대학, 특성화고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 양성사업
  - 2. 미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서비스기업 현장연수사업
  - 3. 서비스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 4. 서비스기업의 수요에 연계된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 5. 서비스산업 인력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 · 장비의 확충
  - 6.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사업
  - 7. 그 밖에 서비스산업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정부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6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정부는 서비스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서비스산업계의 수요를 매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계약학과등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
- 제27조(전문인력양성기관)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서비스산업 인력을 재교육 또는 재훈련하는 서비스산업 특성화 기 관·단체,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서비스산업 특성 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 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장 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 제28조(서비스산업 옴부즈만의 설치) ①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서비스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을 둔다.
  - ②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서비스산업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서비스산업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 건의 사항 접수 및 해소
  - 2. 서비스산업과 관련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
  - 3. 그 밖에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 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 권고 받은 사항에 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은 제3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 대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⑤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등)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 부문별 성장성, 혁신성 등을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이하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이라 한다) 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할 때에는 그 산업의 부가 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수출 가능성, 중소기업 육성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④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의 선정기준·절차, 지원범위와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창업지원)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에 필요한 세제·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1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 및 행정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조업 등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하여 서비스산업에 불리한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2조(서비스 수출 지원) ① 정부는 서비스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 1. 국외 시장 조사, 홍보 및 국외 마케팅
  - 2. 서비스 수출 타당성 분석 및 시범 서비스 개발
  - 3. 서비스 수출 관련 협력 체계 구축
  - 4. 국제 공동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지원
  - 5. 서비스 수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금융지원
  - 6. 서비스 수출 관련 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
  - ② 제1항 각 호의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설치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산업 관련 조사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1.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국내외 동향 조사와 주요 국가의 정부 지원 정책 등 연구
  - 2. 서비스산업으로의 사업전환, 다른 산업과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 산업간의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등 연구
  - 3. 서비스산업 전문인력의 수급동향 조사
  - 4. 업종별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감안한 유망 서비스 산업 발굴
  - 5. 서비스산업 관련 각종 통계와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6.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센터의 연구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서비스산업 인식 개선) 정부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 제35조(통계의 작성·관리)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서비스산업으로의사업전환, 다른 산업과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산업간의 융·복합 관련 통계를 포함하다)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연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7조(청문) 정부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를 계획 기간의 개시 연도로 하여 그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립하여 야 한다.